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5 - 68호

『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,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 개정 및 분할사용 명시(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)
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 → 20일
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 → 20일

○ 군 입영일 특별휴가 추가 신설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

○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

- (사망) 본인 및 배우자의 (증)조부모·외(증)조부모 : 2일 → 3일(1일 증가)
- (사망)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: 2일 → 3일(1일 증가)
- (탈상)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: 1일(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4, 팩스 032-440-87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박승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11. 2.

발 의 자 : 박승희, 박영애, 임정빈,
유제홍, 김정현, 최석정,
황인성, 박종우, 안영수

(찬성자 8 인)

1. 제안이유

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,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재직기간별 특별휴가일수 개정 및 분할사용 명시(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)
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 → 20일
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 → 20일

○ 군 입영일 특별휴가 추가 신설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 신설

○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

- (사망) 본인 및 배우자의 (증)조부모·외(증)조부모 : 2일 → 3일(1일 증가)
- (사망)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: 2일 → 3일(1일 증가)
- (탈상)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: 1일(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다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7조제2항에 의한다.”를 “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,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장기재직휴가는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0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(증)조부모 · 외(증)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략)	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 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 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 정」 제7조제2항에 의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7조제2항에 따르며, 휴가일 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: <u>10일</u>	2. ----- <u>20일</u>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<u>10일</u>	3. ----- <u>20일</u>
<u><신설></u>	⑦ 「병역법」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 자,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 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0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(증)조부모 · 외(증)조부모	2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2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0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(증)조부모 · 외(증)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공무원법 ○ 제59조(위임규정) 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○ 제7조의3(특별휴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
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
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
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
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
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
는 60일)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
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
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
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
야 한다.

1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
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.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
같다)·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

2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
3.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·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
제출한 경우

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
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 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 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 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-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-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해 당 없 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0조
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것으로
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⇒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교육위원회 박 승 희 의원